

■ 공모지침서 정정(변경)내용

1. 정정(변경) 이유 및 취지

1) 공모지침서 제10조 제1항

민간사업자지정신청서는 첨부서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문서임에도 속지표지로 오기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함

2) 공모지침서 제43조 제15항

제15항과 제16항이 본래 하나의 문단임에도 분리된 오류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조항의 순번을 정리하기 위함

2. 정정(변경) 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0조 제1항	<p>제10조 (제출방법)</p> <p>① 사업계획서의 표지 및 내부서류,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에 사업신청자의 회사명은 원본 1부만 기재하고 사본 20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원본 속표지에 대표사의 인감도장([별첨2] <서식8> 인감신고서에서 신고한 인감에 한함)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사본 속표지에는 인장을 날인하지 않음).</p>	<p>제10조 (제출방법)</p> <p>① 사업계획서의 표지 및 내부서류, 사업계획서 설명자료에 사업신청자의 회사명은 원본 1부만 기재하고 사본 20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원본 표지([별첨2]<서식26-1>)에 대표사의 인감도장([별첨2] <서식8> 인감신고서에서 신고한 인감에 한함)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사본 표지에는 인장을 날인하지 않음).</p>	
제43조 제15항	<p>제43조 (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p> <p>⑮ 공원, 사업대상지 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CCTV 등)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p> <p>⑯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위치 및 필지의 조성 경사도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⑰ ~</p>	<p>제43조 (토지공급 관련 유의사항)</p> <p>⑮ 공원, 사업대상지 주변 보도, 완충녹지대 등에 설치된 공공시설물(버스정류장, 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CCTV 등)은 공익시설임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 시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전 미리 현황을 확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위치 및 필지의 조성 경사도 등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⑯ ~</p>	